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정책과 오픈엑세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Policy and Open Access for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정경희* (libinfor@hanmail.net)

초 록

본 논문은 2005~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 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 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opyright policies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the article 31 library exemption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for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considering through cases of copyright disputes occurred in Korea during the 2005~2007. This study proposes that works not for sale including thesi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copyright compensation in the article 31(5)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based on the properties of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and the regulations on works for not for sale in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Also, this study reports that the copyright trust of scholarly articles by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agency is illegal in part and the government which has a duty to direct it has to control the illegal action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such as thesis and scientific articles are to be open access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open policies for them.

Keywords

비영리 학술저작물, 저작권, 학술논문, 학위논문, 학술지, 저작권신탁관리, 오픈 액세스,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copyright, scholarly article, thesis, journal, copyright trust management, open access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겸임교수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내용

국내 디지털 도서관의 원문서비스 대상 자료 중에서 핵심적인 자료는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다. 특히 학술도서관인 대학도서관은 각 대학에서 생산한 학위논문을 디지털화하여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원문서비스하고 있다. 학술논문의 경우엔 영리 업체에서 제작한 DB를 라이선스 체결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이들 두가지 유형의 자료는 저자가 대체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생산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이용되기를 원하는 학술저작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이 두가지 유형의 학술저작물이 연구자의 사고 결과를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저작권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창작물이 출현하도록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및 제135조 저작재산권의 기증 등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73조를 통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오픈 액세스형 기관 리포지토리인 디콜렉션(dCollection)을 박사학위 논문의 주 공표수단으로 하려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과 자신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기를 원하는 창작자들을 위하여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문화관광부의 정책 역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디지털 도서관의 핵심서비스 대상 저작물인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 동향 및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달리 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2006년과 2007년 국내 저작권신탁관리기관에 의하여 취해진 일련의 분쟁조정신청과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은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및 그 관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 대한 저작권 분쟁 및 고소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구분 방법과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규정들을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 정부의 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문화관광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2005년~2007년 사이에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및 고소사건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비영리 학술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정부의 정책문서 및 사건 관련 기관의 공문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 및 관련법을 조사 분석하였다.

1.2 선행 연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서 名和小太郎의 연구(2002)가 있다. 그는 학술정보와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특히 저작권에 중점을 두어 그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진단한 바 있다. 그는 학술정보의 시장화와 전자화에 의하여 학술정보와 저작권의 관계가 크게 바뀌었으며, 특히 그 변화로 인하여 연구자들은 학술정보의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학회가 시장의 원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학술지를 그 원리에 따라 출판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의 정책은 네트워크 상에서 학술정보를 공적 영역에 두도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학술정보의 공유화가 실질적인 표준으로서 일정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결국 名和小太郎은 학술정보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 달리 완전한 시장형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 시스템이 적절히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Okerson(1991)은 미국 저작권법이 학술 출판물에 대하여도 유효한가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학술 출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녀는 판매용 출판물과는 달리 학술출판물은 대체로 공공 혹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생산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보나 공익을 위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학술출판물은 시장의 상품처럼 취급되기 보다는 오히려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 중 문화관광부의 위탁으로 수행된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에 관한 연구”는 2003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28조의 내용 중 특히 개정론자들이 주장하는 도서관의 범위와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 중 일부로 학위논문의 복제, 전송에 따른 보상금 징수의 문제를

법 논리가 아닌 정책 시행상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2.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특성과 저작권의 관계

2.1 저작물 분류 기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정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9가지의 저작물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데, 이는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작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오승중·이해완(2004)은 표현방식에 따른 분류 외에 저작명의, 저작물의 성립순서, 공표 유무, 저작자의 수, 계속성의 유무, 표현 목적 등 6가지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그러한 구별의 실익을 설명한 바 있다. 즉 이들 기준에 의한 저작물의 구별은 저작자의 추정이나 보호기간의 산정, 2차적 저작물의 보호 여부, 공표권의 발생, 법정허락, 저작권의 보호 범위 등에 적용된다.

<표 1> 저작물의 분류

분류기준	유형	구별 이유
표현 방식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보호규정 적용
저작 명의	실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무명저작물	
성립 순서	원저작물, 2차적 저작물	
공표 유무	공표저작물, 미공표저작물	
저작자 수	단독저작물, 공동저작물	
계속성 유무	일회성저작물, 계속저작물	
목적	문예저작물, 기능저작물	
저작자의 상태	자연인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저작권법상 보호	보호받는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 이용 정책 적용
영리성	판매(영리)용 저작물, 비매용(비영리)저작물	
학술성	학술저작물, 비학술저작물	

이러한 분류 이외에 저작물의 저자가 자연인인가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 등인가에

따라 자연인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¹⁾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자연인저작물과는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그 보호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필요하다. 또한 저작물성을 갖추었다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각 규정의 적용대상 저작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한승헌, 1994).

또한 저작물은 그것이 판매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매용 저작물과 비판매용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저작물의 영리성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도서관 면책 중 복제 및 전송 여부의 결정 또는 그 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된다. 또한 학술적인 연구활동의 결과로 창작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학술저작물과 비학술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물론 저작물의 학술성은 저작권법의 규정 적용에 있어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저작자가 저작권법을 통하여 보호받으려고 하는 내용과 그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부분에서는 학술저작물 중 특히 비영리적 학술저작물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그것의 어떠한 특성이 특별한 저작권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2.2 학술저작물의 특성과 저작권

학술저작물은 크게 그것의 영리성 즉,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영리적 학술저작물과 비영리적 학술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학술저작물은 대개의 경우 그것의 광범위한 배포 및 그를 통한 영리 확보를 위하여 영리적인 출판사를 통하여 출판된다. 교재용 학술도서나 단행본 자료 등이 이들 영리적 학술저작물에 해당된다. 그에 비하여 영리적인 출판사를 경유하여 출판되지 않는, 즉 판매에 제공될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저작물은 판매용 학술저작물보다 그 배포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학위논문과 학회를 통하여 배포되는 학술논문이 대표적인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범위에 속한다.

名和小太郎은 과학사학자 Robert Merton이 제시한 학술정보의 특성을 누적성, 공유성, 공개성, 선취성 등 네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한바 있는데(名和小太郎, 2002).

학술정보의 누적성이란 모든 학술저작물은 선인의 연구 업적을 기반으로 이루어

1)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진다는 것을 말한다. Merton은 Newton의 ‘거인의 어깨²⁾’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과학에서의 업적이 사회 공통의 유산과 선택적 누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새로운 하나의 학술저작물은 관련 분야 선인의 연구 결과를 계승하고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며, 이러한 계승-비판-새로운 발견이 누적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곧 학문의 본질이고, 이러한 학문의 본성이 저작권 보호의 전형적 대상인 예술작품과 다른 점이다.

학술정보의 공유성(共有性)이란 연구자의 발견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동 소유임을 말한다. 앞서 설명한 학술정보의 누적성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발견은 그 연구자에게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기여에 대하여 타인이 접근하는 것을 배제할 권한도 갖지 않는다. Merton에 의하면 과학은 제3자적 태도, 보편주의, 제도화된 회의주의, 지적 자산의 공유주의, 겸양 등의 일련의 가치들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있다(Merton, 1973). 이러한 과학의 본질적 특성 중 공유주의(共有主義, communism)란 공산주의(communism) 혹은 공동주의(communalism)를 말하는데, 이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기보다 단지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즉, 과학의 성과는 사회적 협동의 산물이므로 성과 자체는 그 공동체에 귀속되어야 하며, 대신 지식을 산출한 과학자에게는 그러한 성과에 대한 인정과 존경이 주어져야한다는 것이다(석현호 등, 1998). 이것은 곧 학문의 성과물이 사회공동체 전체에 확산되어 구성원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술정보의 공유성 역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학술정보의 공개성이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자들에게 널리 공개하여 평판과 존경을 얻으려는 압박감을 가진다는 특성을 말한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하여 접근에 대한 통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확보보다는 연구결과의 광범위한 배포를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연구의 지원금을 확보하거나, 봉급이나, 승진, 테뉴어의 확보, 상등 간접적인 효과, 즉 효과 소득(impact income)(Harnad, 2001)을 얻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공개성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시키는 권한을 기본 작동 원리로 삼고 있는 저작권 제도와 상충되는 점이다.

학술정보에 대한 선취권(先取權)은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특정 연구자의 새로운 연구업적이 그의 기여라고 인정받는 것으로서 얻어진다. 연구자가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러한 선취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연구결과의 발

2)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 1675년에 한 말로 “만일 내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표 그 자체만으로는 연구자 집단에 자신의 연구 업적을 널리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그것은 광범위한 배포를 통한 공개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술정보의 공개성과 관련 있다. 즉, 광범위한 공개를 전제로 얻어질 수 있는 학술정보의 선택권 역시 저작권의 기본 속성과는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학술정보의 네가지 속성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누적성은 공유가 이루어질 때 가능해지며, 공유는 공개를 전제로 가능하고, 선택성 역시 공개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특히 학술정보에서 공개는 다른 세가지 학술정보의 본성이 존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근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물에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현대의 저작권법은 학술저작물 특히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이러한 공개성을 위축 시킴으로써,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 저작물 이용활성화 관련 저작권법 규정과 정부 정책 분석

3.1 저작권법의 이용활성화 규정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뿐만이 아니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상세한 규정을 두거나, 포괄적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조항들을 제4절 저작재산권 중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제23조~제36조에 걸쳐 제시하고 있으며, 영미법의 경우 개별적인 몇 개의 조항과 더불어 특정한 이용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용인지를 판단하는 공정이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규정으로서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어려워 이용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보호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는 판단 하에 도입된 법정허락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과 저작권자에게 이용조건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허락

(compulsory license)으로 구분된다(오승중·이해완, 2004).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를 구별하지 않고 법정허락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아래 제50조~제52조에 걸쳐 그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제50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한 방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와 협의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제51조),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을 다른 판매용 음반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와 협의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일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허락 규정과는 별도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제25조 제1항),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그 수업목적상 필요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경우,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제4항). 아울러 도서관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도서관 등이 일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제5항)³⁾. 위의 두가지 경우가 저작권법 제5절 법정허락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 규정은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허락 제도를 응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5절 법정허락의 유형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법이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허락을 한 형태임에 비해, 학교 교육 목적에 활용하거나 도서관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그러한 “상당한 노력”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5절의 법정허락의 세가지 경우보다 적극적인 이용활성화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도서관과 학교 교육 목적에 다른 법정허락의 경우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 것은 이 두 기관의 공공성 및 그 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비영리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 역시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창작적 노력의 산물이지만, 그러한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선인들이 축적해 놓은 문화유산을 기초로 하므로 저작물은 일종의 인

3)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가 비매용으로 발행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제31조 제5항의 단서조항)

류공통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오승종·이해완, 2004).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두어, 일정 기간이 경과될 경우 저작물이 공유지(public domain)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은 제7조 제1항에서 “이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내 저작권법 역시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중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서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된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등과 제135조 저작재산권의 기증 등도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규정이다.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73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 바 있다. 즉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저작권법 제134조 제1항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에 대한 원활한 이용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저작권 소멸 저작물과 더불어 일반 저작물에 대한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실시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조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고(동조 제1항),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렇게 기증된 저작물 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정허락, 존속기간 제한 등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되어 왔던 이용활성화 규정과 별도로 2006년 12월과 2007년 6월에 각각 개정된 저작권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위와 같은 규정들은 그간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됨으로써 저작권법 고유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법 개정이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개정이었다고 판단된다.

3.2 정부의 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

1)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07년 6월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1.0)”(이하 ‘가이드라인’)이다. UCC(User Created Content),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참여, 개방, 공유라는 웹 2.0의 핵심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도구(천홍말, 윤종수, 2007)로 여겨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조 목적 및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도모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UCC의 제작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문화관광부, 2007)고 그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UCC 제작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저작권자 등 UCC와 관련 주체들과 관계있는 법규 안내 및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을 위한 권고사항과 Q&A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UCC 제작자들과 관련하여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 조건을 표시하는 등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UCC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UCC 제작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통제를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단체와 계약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이용조건이나 방법을 직접 표시하여 콘텐츠가 널리 사용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방식을 위해서 CCL이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정책은 특히 웹 2.0 시대의 저작물이란 단순히 저작권법상의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닌, 개방과 공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되고 공유될 대상이라는 인식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원칙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순수 창작 UCC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됨(문화관광부, 2007)”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저작물과 달리 UCC에 CCL이나 정보공유라이선스 등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UCC 저작물이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UCC는 통제를 통한 영리 확보보다는 공개와 공유를 원하는 저작물이라고 추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정보공유라이선스 2.0 공동 제작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은 국내의 시민단체인 정보공유연대가 2004년 "저작자의

콘텐츠 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디지털 도서관, 과학 기술 분야 등의 오픈 액세스 저널 및 아카이브, 정보트러스트운동 등에 널리 활용되어, 나아가서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과 소비라는 인터넷 공동체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발한 바 있다(정보공유연대, 2004). 그러나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은 약관의 내용이 모호하고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정보공유연대, 2005).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정 작업에는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현재의 저작권위원회, 이하 ‘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2005년 4월부터 ‘위원회’와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그해 8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개발완료하게 되었다(정보공유연대, 2005). 이후 문화관광부는 부내 홈페이지 “알림마당”⁴⁾에 본 라이선스를 이용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이용허락표시 제도 채택이 “자신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길 원하는 저작자와 그러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고자 하는 이용자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향후 부내의 다른 사이트와 각종 포털에도 이 표시제도를 채택하도록 권유해 나갈 계획(문화관광부, 2005)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07년 10월 현재에도 문화관광부 사이트 내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알림마당’에만 채택되고 있어 2005년 당시 발표했던 부내에서의 정보공유라이선스 확대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논의했던 ‘가이드라인’에서 UCC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주무부처로서 문화관광부가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산발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위논문 오픈 액세스 정책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이 2003년부터 추진해 온 바 있는 대학 기관 리포지토리 사업과 이에 대한 최근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또한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한 예로 설명할 수 있다. KERIS는 2003년 대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저작물을 수집하여 저장하고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dCollection(Digital Collection, 국가지식정보생성 및 유통체계) 사업을 시작(장금연, 김동우, 2003)한 바 있다. dCollection의 특징은 저장된 저작물에 CCL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이 사업은 시작 당시부터 대학에서 생산된 간행물을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저작물 기탁자에게 CCL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박미성, 2005). 2006년 말 현재 dCollection에는 특히 학위논문의 원문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사업

4)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news/notice_view.jsp>

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학위논문 등록률은 평균 87.2%(김현희 등저, 2006)에 이를 정도로 높다.

2007년 6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교육인적자원부 2007) 및 그 첨부 자료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학위논문에 대한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각 대학이 dCollection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한 결과 2007년 6월 현재 138개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이루어냈다. 또한 동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말에는 모두 206개 대학(4년제 대학 184개, 대학원 대학 22개)이 dCollection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⁵⁾를 수정하여 dCollection을 박사학위 논문 공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논문 공표 방법을 새롭게 지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은 석사학위 논문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위논문에 대한 이러한 계획은 dCollection이 정보의 공유 및 이용 확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CCL 기반의 오픈 액세스 기관 리포지토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위논문은 도서관의 핵심적인 자원 중 하나이며, 특히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 자료이기도 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위논문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학술정보가 자유롭게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해당 정부 부처가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학위논문과 같은 비영리 학술정보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4. 비영리 학술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분쟁 사건 분석

앞장에서 저작물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저작권법의 규정과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은 이러한 규정 및 정책의 방향과 상반되는 최근의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 한다.

4.1 학위논문

2005년~2006년 사이에 발생한 도서관의 디지털화된 학위논문 서비스와 관련하

5)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은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2005년 12월 학위논문 원문 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저작권신탁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하 '센터')가 신청한 다음 네 가지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임영희, 2006).

가) 서울대 석박사 학위논문 13건에 대한 '협의회'의 서비스 중단 요청

나) 회원기관간 원문 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

다) 원문의 전권 다운로드 및 인쇄서비스에 대한 중단 요청

라) 과금장치 없이 원문을 대학간 전송하는 것에 대한 중단 요청

이러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센터'에서 요청한 신탁된 학위논문 13건에 대한 원문서비스를 '협의회'가 중지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센터'가 원고적격권이 없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러한 분쟁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 '센터'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및 '협의회'를 고소하였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2005년 12월의 분쟁 조정 신청 대상이었던, 13건의 학위논문이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 기관에 의하여 이용되었다는 것이다(한국복사전송권센터, 2006). 이 고소 사건은 이후 더 이상 발표된 공식 자료가 없어 그 진행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이 사건의 결과가 아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 그 자체의 중요성과 그것의 지속적 반복 가능성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한 이해는 관련된 기관과 법에 대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사실 파악을 요한다.

'협의회'는 국내 대학에서 생산된 학위논문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 국내 150여개 대학이 참여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2004년 현재 약 40만건의 학위논문 원문을 공유하고 있다(김성중, 2006). 학위논문은 특히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과정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원(윤희윤, 2002)일 뿐만 아니라 그 외 교수 및 연구자들에게도 가치 있는 자료로서 대학도서관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콘텐츠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각 대학에서 생산된 학위논문 원문을 디지털화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공동으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한편 2003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28조6)에 따르면 도서관이 소장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관내에서 이용자에게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간 전송 및 출력 서비스를 할 경우 일정한 보상금을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금 지급 의무화 규정에 대하여 대학도서관 단체는 대학에서 생산된 학위논문의 경우 비판매용으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위논문 저자가 '센터'에 권리 신탁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김성중, 2006,

6) 현행 저작권법 제31조.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2005) 학위논문 저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은 자료를 중심으로 ‘협의회’ 사이트⁷⁾를 통하여 서비스를 해 왔다. ‘센터’는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로서, 신탁받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도서관으로부터 앞서 언급한 출력과 전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저작재산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대학도서관 협의체는 학위논문의 경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생산되었고, 따라서 그 저자가 저작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권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센터’는 다른 모든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학위논문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므로 보상금 지급 대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상충된 의견에 따라 ‘협의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대학도서관간 원문 전송 복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센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보상금 징수를 위한 과금장치를 설치하고 서비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센터’는 협의회를 통하여 서비스되던 학위논문 중 13건에 대하여 그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고, 해당 논문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청을 한 것이다. 앞서 ‘위원회’ 분쟁조정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센터’는 위탁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13건 이외의 수만건의 학위논문 서비스에 대한 중단 요청을 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학위논문의 비영리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를 최대화하려는 도서관은 비영리적으로 생산된 학위논문의 경우 엄격한 저작권의 보호보다는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센터’는 학위논문의 비영리성보다는 그것의 저작물성 즉,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는 법 해석의 차원에서 그 보호를 주장한 것이다. 향후 이 대립된 두 견해는 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학위논문의 저자로부터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노력으로, 후자의 경우 저자에게 권리 신탁을 받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허락과 권리신탁 모두를 밝히지 않은 수많은 과거의 학위논문과 미래의 일부 학위논문이 존재할 것이고, 이들 ‘침묵하는 학위논문’에 대한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 제도가 도서관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몇 개 도서관이 이 제도를 채택하든 그것은 개별 도서관의 문제(심동섭, 2006)라는 인식은 너무 안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학원이라는 고등교육과정에 투여된 다양한 참여자의 노력의 결과로 생산된 고급 학술정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활용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인가라는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그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7) <<http://thesis.or.kr/>>

4.2 학술논문

학위논문의 디지털 원문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의 양측이 권리신탁기관과 대학도서관인 것에 비해, 학술논문의 경우는 권리신탁기관과 원문DB 업체였다. ‘센터’는 우리나라의 학술지를 원문 DB로 구축하여 주로 도서관에 라이선스 체결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개의 업체인 한국학술정보(이하 H업체)와 누리미디어(이하 N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및 민형사상 고소를 취한 바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센터’가 두 업체와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이들 두 업체의 대응은 상반된 상태로 전개되었다.

1) 학회에 대한 저작권 신탁 유도

‘센터’는 H업체에 대하여 2006년도의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과 2007년도 4월의 협의에 이르기까지 여러번의 조정과정을 통하여 대략 다음 세가지의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하였다(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7). 첫째, H업체가 서비스 대상이 되는 학술지를 발간한 학회와 체결한 계약사항을 ‘센터’가 승계하는 것과 둘째, 저작권료 분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H업체가 판매내역 및 판매금액 등의 이용내역을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는 연 2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할 것, 셋째 학술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학회와 논문저자간 이용동의서가 작성된 논문에 대하여는 학회에 25%,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 15% 및 개인저자 10%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중 특히 첫째 사항인 계약사항 승계는 H업체와 학술지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맺고 있는 학회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센터’에 신탁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센터’는 그동안 H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1200여개 학회에 “개정 저작권법 시행 안내 및 저작물 신탁의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2007.4.25)하여, 학회가 ‘센터’에 저작권 신탁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H업체 역시 계약관계에 있는 학회에 “개정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DB사업 방법 변경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2007.4)하여 학회가 ‘센터’에 저작권 신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파악해야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몇몇 연구(정경희, 2002, 정경희 2006, 이재민, 2005)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학술지 원문 DB 업체는 상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문 DB를 구축하고 서비스해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술지 출판시 게재된 논문의 저자와 학회

가 개별적인 저작권양도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자가 학회가 아니라 개별 논문의 저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리 업체는 개별 저자가 아닌 학회와 학술논문 원문 DB 구축 및 판매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문 DB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또 한가지는 2003년 저작권법 개정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일부 비친고죄 조항이 도입된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140조⁸⁾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죄는 저작권자의 공소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저작권자로부터 권리양도를 받지 않은 학술논문에 대한 H업체의 원문 DB구축과 라이선스 체결에 의한 유통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H업체로서는 이러한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센터'와의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센터' 역시 학술논문에 대한 정확한 저작권자인 논문의 저자(학회와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로부터 신탁을 받지 않는 한 그 논문에 대한 권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H업체에 이용허락을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H업체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술논문에 대한 이용허락을 '센터'로부터 받고 그를 기반으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이것은 다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가 될 수 밖에 없다.

2) 학회에 대한 저작권 보유 권장

또 다른 학술논문 원문 DB 업체인 N업체와 '센터'간의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하게 진행된 바 있다. '센터'는 2006년 5월 '센터'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N업체가 이용허락을 얻은 후 서비스할 것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N업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7). 이후 '센터'는 2007년 2월 10명의 신탁 저자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실시하였다(누리미디어, 2007). 2007년 7월 현재 형사고소는 진행 중이며, 민사고소의 경우 본 사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를 요청하는 이용 중지 가처분 신청”(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7)

8)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및 제13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 제2항 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 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 기각된바 있다. 민사고소의 판결 요지는 “통상 원저작권자가 자신이 소속된 학회 등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회지 또는 간행물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 관례상 관련 저작권을 학회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날로그 및 무상제공 방식을 예정한 것이지, 디지털화된 2차적 저작물이나 유상제공방식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N업체가 사건의 대상이 된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건 대상 저작물이 전송서비스되는 것 자체가 사건 신청인인 '센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⁹⁾.

'센터'가 두 영리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및 법적 고소를 취한 것은 “학회에 게재된 저작물이 DB 사업자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 작성되어 유상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원저작자인 개인은 이러한 허락을 한 바 없고, 저작권료를 분배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한 것이다(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7). 구체적으로는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2) 저작권 신탁을 통하여 학술 DB 사업을 적법화 하고, 3) 저작권 사용료를 확대하고, 4) 저작권 사용료의 투명한 정산과 분배를 위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이러한 사업은 학술논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센터'는 위탁관리업체로서 위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보호대상이 될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도록 할 의무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저작자들이 모두 동일한 방법과 수준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제2.2장에서도 밝혔듯이 학술논문의 저자들이 학술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강력한 저작재산권의 보호와 그를 통한 저작권료 확보보다는 그 논문의 공개와 이용을 통한 평판과 명성이다. 제3장에서 제시한 정부의 저작권 이용활성화 정책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센터'는 단순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 학술논문의 저자에게 저작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의 저작권 보호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센터'의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단순히 두 영리업체의 학술 DB 사업을 적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일 뿐이라는 오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5.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도서관 면책 규정 및 저

9)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사건 2007카합312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가처분 결정

저작권 정책에 대한 제언

5.1 학위논문

앞서 분석한 학위논문의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대학도서관이 현행 저작권법 제 31조에서 규정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러한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현재 학위논문은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도서관 중 다수가 학위논문의 경우 보상금 지급의 예외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앞서와 같은 분쟁이 지속되거나, 대학도서관에서 분쟁을 피하려, 학위논문에 대한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비스의 중단은 도서관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학위논문이라는 중요한 학술자원이 웹환경에서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서비스되지 못함으로써, 우리사회의 학문의 발전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본 논문은 학위논문의 원활한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의 개정과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1) 학위논문의 저작물성

학위논문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 작성¹⁰⁾된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 창작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위논문의 저작자는 그 논문을 작성한 학생이다. 또한 학위논문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 저작물성 즉,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학위논문은 또한 그것이 학문 연구의 결과 작성된 학술저작물이면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2) 학위논문에 대한 제31조 보상금 적용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의 보상금 제도는 판매용 도서인가 비매용 도서인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 동법 제31조 제3항은 도서관이 관간 전송을 위하여 보관된 도서를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단서 조항을 통하여 해당 도서의 일부 혹은 전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년이 경과한 후에 복제 및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판매용 발행도서의 경우 그 이익 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동법 동조 제4항은 도서관이 보존용 디지털 복제물을 작성하거나, 관간 혹은 관내 전송, 복제시 해당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엔 도서관이 그 도서를 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동법 동조 제5항의 단서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저작물이 그 전부 혹은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넷째, 보상금의 적용 또한 그것이 판매용인가 비판매용인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즉, 출력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판매용은 1면당 5원인 반면, 비판매용은 3원이며, 전송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판매용은 20원을 부과한 반면 비판매용은 부과하지 않고 있다.¹¹⁾

이러한 규정들은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지만, 저작물의 영리성 여부 -즉, 판매를 통한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저작물인가의 여부-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31조에 보상금 규정을 둔 배경을 통해서도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영리성을 그 보호수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도서관간 전송에 보상금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3년 개정에서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판매용으로 작성된 저작물이 도서관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한 면책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의 경우 도서관간 전송에 대한 보상금의 면제 뿐만이 아닌 출력에 대한 보상금 또한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정부 정책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학위논문을 모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CCL 기반의 dCollection을 운영하고, 더 많은 학위논문이 이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를 통하여 배포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학위논문에 대한 보상금 징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저작권 주무부처로서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위논문의 저자에게 저작권 신탁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것의 비영리성과 학술성을 고려하여 학위논문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UCC 가이드라인 등은 UCC의 비영리성을 고려하여 그 저작자들이 CCL이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서라도 대표적인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

11) 문화관광부 고시 2003-9

가 있다. 또한 이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틀에 묶여 그 이용이 제한되기 보다는 널리 이용되어 학술저작물의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액세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5.2 학술논문

1) 적법성

학위논문이 대학도서관에서 직접 디지털화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학술 논문은 영리업체에 의하여 원문 DB로 제작되어 도서관에 라이선스 체결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회에 저작권이 양도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영리업체가 학회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원문 DB를 구축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 학회에 양도되지 않은 학술논문에 대하여 '센터'가 학회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영리업체의 원문 DB 작성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 것 또한 불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센터'의 민사고소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권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양도되는 권리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고 학회의 투고규정 등에 논문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이 학회에 양도된다는 등의 표현만 있는 경우, 그 양도의 범위는 아날로그 및 비영리적인 이용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센터'가 관례상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한 학술지 논문에 대하여 학회로부터 권리신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회가 신탁받은 권리의 범위는 아날로그 및 무상제공 방식에 대한 이용허락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센터는 디지털 방식의 유상제공방식의 사업을 하는 학술지 원문 DB 업체에 학술논문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권한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저작권 주무부처이자 저작권 신탁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청인 문화관광부는 센터의 이러한 불법적인 사업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와 정부의 정책

학술논문을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배포하는 것은 현재 학술 커뮤니티에서 세계적인 이슈이다. 특히 학술지에 관한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도 최근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포럼¹²⁾을 형성한 바 있다. 오픈 액세스는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라고 허락하는 방식으로서 오히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2) <<http://www.krm.or.kr/openaccess/>>

저작권법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 또한 모든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의 보호 하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통제를 원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즉, 특정의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기를 원한다(문화관광부, 2006)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하에 “UCC 가이드라인”이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의 저작자의 경우 이와 같이 자신의 저작물이 널리 이용되기를 원하는 대표적인 저작자 그룹이다.

국내 저작권법 제108조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항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최근의 '센터'의 업무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영리 업체의 학술 논문 DB 사업 합법화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6. 결론

지금까지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특성과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규정 및 정부의 비영리 저작물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비영리 학술저작물인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물의 속성상 분명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지만, 그 저작자가 판매를 통한 영리의 추구보다 광범위한 배포를 통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저작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나 정부의 저작물에 대한 정책 방향이 일반 판매용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과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고찰이었다.

본 연구는 2005년말 이후로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학위논문과 학술논문과 관련한 일련의 분쟁이 비영리 저작물의 특성을 간과한 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해당 사건의 진말과 그 사건의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본 논문은 학위논문의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의 보상금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부의 정책 또한 학위논문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에도 신탁을 통한 학술논문의 영리화가 아닌 오픈 액세스 방식의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Harnad, Stevan. 2001. For Whom the Gate Tolls? How and Why to Free the Refereed Research Literature Online Through Author/Institution Self-Archiving, Now. [cited 2007.10.15] <<http://cogprints.org/1639/>>.
- Merton, Robert K. 1973. 과학사회학 II. 석현호, 양종희, 정창수 역. 서울: 민음사, 1998.
- Okerson, Ann. 1991. With Feathers: Effects of Ownership on Scholarly Publishing. College & Research Libraries, September, 1991: 425-438.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부, 디지털 학위논문 유통 시스템 전국대학 연내 보급" 2007. 6.19 보도자료. 학위논문DB 구축사업 추진 계획(첨부자료) [cited 2007. 9. 20] <http://moe.korea.kr/moe/jsp/moe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b_sec_2&_id=155214508&currPage=8&_category=>
- 김성중. 2006. 디지털도서관의 현재 상황과 활성화 방안. “저작물의 공정이용가 디지털도서관 활성화 모색을 위한 저작권법 토론회. 2006.1.20.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 pp.57-69.
-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2005. “현행 저작권법 및 동 시행령에 관한 탄원서 송부” 공문(2005.3.3) 및 붙임 자료.
- 名和小太郎. 2002. 學術情報と知的所有權.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2(우인하 역. 학술정보와 지적소유권.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 문화관광부. 2005.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일부에 저작물 이용허락표시 채택”.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2005.10.24. [cited 2007.8.25] <<http://www.mct.go.kr>>
- 문화관광부. 2006.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2007.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1.0). 서울: 문화관광부.
- 박미성. 2005. 오픈엑세스를 위한 저작권관리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한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255-284.
- 석현호, 양종희, 정창수. 1998. 머튼과 과학사회학의 발전. (석현호, 양종희, 정창수 역. 과학사회학 II. 서울: 민음사, 1998. pp.1037-1059)
- 심동섭. 2006. “서울대 도서관을 응원합니다”를 읽고. 도메리 게시글 17024. <http://www.domeri.or.kr/DMR_mailingList/Mailing_View.asp?g_idx=17024&Page=1&sc=W&st=%EC%8B%AC%EB%8F%99%EC%84%AD>
- 오승중, 이해완. 2004. 『저작권법』 제3판. 서울: 박영사.
- 윤희운. 2002. 대학도서관경영론. 서울 : 태일사, 2002.
- 이재민. 2005. 오픈 액세스를 위한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 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대학교.
- 임경훈. 2004. 디지털 복제·전송의 도서관 면책과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관한 연구. 성

- 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희. 2006. “학위논문 원문 공동이용협의회 관련 ‘저작권 분쟁 조정’ 결과 알림”. 도서관메일링 리스트 글번호 16855.
- 정경희. 2002. 정보공유적 모델 기반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연구: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4): 383-399.
- 정경희. 2006. 의학 분야 오픈 액세스 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의학 정보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389-414.
- 정보공유연대. 2004. 개발보고서: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필요성과 국내 모델. [cited 2007.8.20] <<http://freeuse.or.kr/info/report.html>>
- 정보공유연대. 2005.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해설서. 서울: 정보공유연대.
- 천홍말, 윤중수. 2007. Web 2.0과 UCC : 진화경향과 전략적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7 하계학술발표논문집 및 학회지, 15(1): 91-98.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6. ““서울대 도서관을 응원합니다”에 붙이는 글“ 도서관메일링 리스트 글번호 17017.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6. “불법 저작물 이용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피소” 도서관메일링 리스트 글번호 1703.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7. 학술저작물 권리보호를 위한 센터 업무 현황.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자료실 게시글 33번 “누리미디어 형사고소건에 판결문” 첨부파일 [cited 2007.7.3] <<http://www.copyright.or.kr/bbs/databank.asp>>
- 한승헌. 1994.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서울: 나남출판.